

##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(2021.6.22.개정)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정관 제77조의 1 규정에 따라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21.6.22.개정)

### 제2장 운영위원회

제2조(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) ① 정기운영위원회는 년 2회, 임시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 2개월 안에, 그리고 매회계년도 마감 후 2개월 안에 개최하여야 한다.

③ 예산지침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7월 이내로,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10월 이내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3조(회의록 작성)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4조(분과위원회) 운영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# 제3장 조직과 기능

제5조(사무과) ① 산학협력단에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과를 두고, 필요에 따라 이외의 부서 및 기구를 둘 수 있다.

② 사무과는 일반 행정업무와 연구비관련업무 및 산학협력관련 제반 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제6조(직원) ① 산학협력단에 과장의 직급을 둘 수 있다.

② 과장의 직책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.(2021.6.22.개정)

③ 직원의 정년은 60세 이내로 한다.

제7조(급여 및 복지) ① 전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무직 급여표를 참조하여 해당 연봉으로 책정하되,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연봉계약제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.(2021.6.22.개정)

② 겸직 및 전임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연금 및 보험은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무직원연금 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.(2021.6.22.개정)

### 제4장 보칙

제8조(세칙의 개정) 이 시행세칙의 개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9조(세칙의 보완) 이 시행세칙의 보완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